

군산구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2.03.01.
개정 2005.03.01.
개정 2006.04.06.
개정 2007.03.01.
개정 2008.03.01.
개정 2011.05.01.
개정 2011.07.21.
개정 2013.03.27.
개정 2016.04.15.
개정 2021.04.09.
개정 2022.03.01.
개정 2022.10.06.
개정 2023.04.11.
[개정 2024.12.23.](#)

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제3~5호, 7호의 휴업기간은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 수료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산구암초등학교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학교는 군산구암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64-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5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

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학생해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범위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 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4.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경찰청 소년엄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5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결석으로 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5일 미만의 결석은 단기결석으로 정하여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나, 동일한 사유로 10일 이상 결석하면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 한다. 이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 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 ② 학생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전학·편입학·휴학·취학유예

제16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제17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 5. 27. 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 5. 27. 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20조(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

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2조(재입학·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기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

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24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 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제24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대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교장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0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1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9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4조(학생의 학교생활)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장 특수교육 운영

제37조(특수학급의 편성 운영) ① 교육청의 학급 인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수하급을 편성 운영한다.

② 특수학급은 매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8조(차별의 금지)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④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교육활동 평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장애학생 평가 조정제를 운영한다.

⑥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교직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통합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거쳐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②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편의시설을 갖춘다.

제40조(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1조(장애학생 인권보호) ① 장애학생의 인간존엄권, 발달권, 보호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②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③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인 경우 일반학생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42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02. 03.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3. 01.)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06.)

이 규칙은 200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01.)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01.)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5. 01.)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7. 21.)

이 규칙은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27.)

이 규칙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4. 15.)

이 규칙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09.)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0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06.)

이 규칙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1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